

부속서 18A

협력

제 1 절

무역투자진흥

1.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(“KOTRA”)와 싱가포르 국제기업청(“IE Singapore”) 간의 협력은 제18.6조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싱가포르 국제기업청 간의 약정에 따라 수행된다. 그러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싱가포르 국제기업청 간의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.

- 가. 정보통신기술·전자·자동차·식품 및 물류산업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상호 합의한 고성장분야에 중점을 둔 산업별 구체적 사업 및 활동의 공동 조직
- 나.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관계 구축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위하여 양 당사국의 온라인 비즈니스 매치메이킹 데이터베이스를 전자적으로 연계
- 다. 싱가포르 내 대한민국 비즈니스 지원센터의 지원을 통한 싱가포르 기업과 대한민국 기업 간 협력 증진, 대한민국기업의 싱가포르 지역 내 새로운 시장 개척 지원 및 싱가포르 기업의 충분한 수요와 관심이 있는 경우, 싱가포르는 대한민국에 비즈니스 센터 설치, 그리고
- 다. 특히, 일방 당사국이 자국의 영토 내에서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분야 와 관련된 무역박람회의 경우 타방 당사국이 주관하는 무역박람회에 각 당사국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모든 상당한 노력

2. 양 당사국은, 적절한 경우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싱가포르 국제기업청 간의 그러한 협력을 촉진한다.

3.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수출신용보험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분야에서 한국수출보험공사(“KEIC”)와 싱가포르 수출신용보험(“ECICS”) 간 협력을 촉진한다.

제 2 절

방송협력

1. 대한민국 방송위원회(“KBC”)와 싱가포르 미디어 개발청(“MDA”)(“양측”) 간 협력은 제18.8조 및 대한민국 방송위원회와 싱가포르 미디어 개발청 간의 약정에 따라 수행된다.
2. 협력이 양측의 권한범위 내에 속한다는 조건 하에서, 양측은 다음 영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협력에 중점을 두기로 합의한다.
 - 가. 디지털 방송 및 내용규제 등과 같은 방송정책문제에 관한 의견 및 정보 교환
 - 나. 민간분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체계 마련에 관한 의견 및 정보 교환, 디지털방송컨텐츠의 상호 경험 습득, 텔레비전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과 같은 방송컨텐츠 발전에 관한 협력
 - 다. 양 당사국의 방송분야를 규율하는 법률 및 규정에 따라,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 방송사간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 관련 교류 촉진
 - 라. 방송사 관리자의 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교류 촉진
 - 마. 텔레비전 프로그램 또는 디지털 미디어의 공동제작 그리고 최첨단 방송 기술의 연구개발과 같은 분야에서의 산업협력 활성화
 - 바. 국제적으로 양 당사국의 방송컨텐츠의 마케팅 지원 및 대한민국의 Broadcast World Wide 또는 싱가포르의 아시아미디어페스티벌과 같은 기회를 통하여 양 당사국의 방송프로그램 전시를 촉진
 - 사. 방송 관련 행사 참여를 포함한 방문의 협의, 그리고
 - 아. 싱가포르 내에서의 대한민국 텔레비전 채널의 재송신 및 반대 경우의 장려
3. 양 당사국 간의 방송 협력은 그러한 협력의 범위가 양측의 권한범위 내인 조건에서, 다음 형태로 이루어진다.
 - 가. 구축된 의사소통 경로를 통한 의견 및 정보의 교환
 - 나. 방송과 관련한 방문
 - 다. 산업체 간 제휴의 장려, 그리고
 - 라. 그 밖에 양 당사국 간 서면으로 합의된 협력 형태

1. 제18.10조에 따라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공무원 교류프로그램(이하 “프로그램”이라 한다)을 수행한다.

2. 프로그램은 다음에 따라 수행된다.

- 가. 일방 당사국의 정부기관(“파견 보내는 기관”)은 프로그램에 참가할 자국 공무원(“공무원”)을 선발하고, 외교 채널을 통하여 타방 당사국의 대응기관에(“파견 받는 기관”)에 자국 공무원 파견 의사를 통보한다.
- 나. 파견 받는 기관은 외교 채널을 통하여 프로그램에 공무원의 참가에 관한 입장을 표시한다. 파견 보내는 기관과 파견 받는 기관은 공무원이 프로그램에 참가하는지 여부를 상호동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- 다. 파견 보내는 기관과 파견 받는 기관은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고려하면서 개시일 및 기간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공무원의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외교 채널을 통하여 협의한다.
- 라. 상호 합의한 조건에 따라 공무원은 프로그램에 참가한다.

3. 파견 보내는 당사국은 공무원에게 다음 조건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.

- 가. 파견 받는 당사국의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며, 그곳에서의 활동에 있어, 정당한 이유없이, 파견 받는 기관의 관련지시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아니할 것
- 나. 프로그램 참가 중에는 일방 당사국을 위한 첨보에 관련된 활동에도 종사하지 아니할 것. 그리고
- 다. 파견 받는 기관이 공무원에게 기밀로 한다고 통보한 정보를 누설하지 아니할 것

4. 파견 보내는 기관은 파견 받는 기관에 공무원을 파견하기 전에 공무원이 제3항가호·나호 및 다호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할 것을 동의한다는 것을 기재한 서명문서를 외교 채널을 통하여 파견 받는 기관에 제출한다. 위 조건의 미준수는 프로그램 공무원의 참가 종료 사유가 될 수 있다.

5. 파견 받는 정부는 여비 및 체재비를 포함하여 공무원의 급여 및 수당, 그 밖의 필요경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6. 파견 받는 기관은 파견 보내는 기관에서 공무원이 관여하던 동일 주

제 사안과 합치하는 적절한 배치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고, 또한 공무원을 파견 받는 기관의 동료와 함께 하는 사무환경 하에 두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무원의 언어능력, 관심, 전문분야, 배경이 되는 지식, 파견 받는 기관의 일정 정보에 대한 비밀보전의 요건을 고려한다.

7. 파견 받는 정부는 필요한 경우, 적절한 비자 또는 근로허가를 공무원에게 발급하여 프로그램이 가능한 한 신속하고 원활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.

8. 양 당사국은 프로그램 및 이 부속서의 이행을 필요시 적절하게 평가한다.

9.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이행으로부터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필요시 타방 당사국과 협의한다.

제 4 절 영화제작 협력

한국영화진흥위원회(“KOEIC”)와 미디어개발청(“MDA”) 간의 협력은 제 18.13조와 양 기관 간 체결예정인 약정에 따라 수행된다. 한국영화진흥위원회와 미디어개발청 간의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.

- 가. 각 당사국의 영화산업 제작자의 영화공동제작 장려 및 촉진
- 나. 각 당사국 영역 내에서 공동제작된 영화의 배급 지원
- 다. 타방 당사국 영역 내에서 각 당사국의 미디어분야 학생, 교사 및 전문가에 대한 훈련 및 부수적 기회의 장려 및 촉진
- 라. 타방 당사국 영역 내에서 개최되는 영화제 기간 중 일방 당사국의 영화상영 기회와 동 행사기간 중 문화교류 기회의 장려 및 촉진